



공급업체 행동 강령

이 공급업체 행동 강령("강령")에는 General Motors Company("GM")가 GM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공급업체")에 대해 요구하는 행동 강령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강령은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운영에 대한 당사의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또한 GM이 서명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청렴성, 책임 있는 소싱 및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GM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GM은 모든 공급업체가 자사의 공급망을 통해 이와 유사한 요구 사항을 하달할 것을 기대합니다.

GM은 공급망 전체에 걸쳐 당사의 표준을 충족하고 GM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공급업체와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GM은 공급업체가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 및 GM 정책을 준수하며, 또한 [GM 행동 강령](#), [Winning with Integrity](#) 및 본 강령의 원칙과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권

GM은 모든 공급업체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완화하고, 또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로세스를 적절히 마련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GM의 인권 정책](#)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대치를 준수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기대되고 또한 요구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은 인권과 관련하여 GM의 업무에 대한 지도적인 토대로 역할을 합니다. GM은 또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즉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국제인권장전, 세계인권선언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급업체도 이를 준수하는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이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자유 선택에 의한 고용

공급업체와 그의 고용 기관은 노예, 강제 수감자, 담보, 견습공 계약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인신매매에 관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과정의 일부로 고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서면 고용 계약 또는 통지를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그들이 본국을 떠나기 전에 고용 계약서를 받으며, 현지 법률을 따르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 국가에 도착 시 이들을 대체하거나 교체하지 않습니다. 피고용자는 반드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자유롭게 고용 관계를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의 자유

공급업체와 그의 고용 기관은 안전 또는 보안 목적을 위해 합법적이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의 기숙사 또는 생활 구역 등 회사가 제공한 시설에 출입하는 데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임금이 입금되는 은행 지불 카드의 보관,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와 그의 고용 기관은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여권 또는 취업 허가증과 같은 신분 또는 이주 관련 문서를 파기, 유보 또는 은닉하지 않습니다.

아동 노동

공급업체와 그의 고용 기관은 아동 노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GM은 아동 노동 사용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와 채용된 근로자의 연령이 ILO 최소 연령 협약(No. 138)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장치를 시행하며, 또한 요청 시 이러한 확인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공급업체의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이 발견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아동 고용을 중단하고 아동을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공급업체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미성년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근로자가 그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에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공급업체는 미성년 근로자를 즉시 해당 상황에서 배제하고 연령에 적합한 대체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근로 시간

공급업체는 근로 시간에 관한 현지 법률 및 단체 교섭 협약(해당되는 경우)을 준수합니다. 근로 시간은 반드시 현지 법률에서 정한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 및 수당

공급업체와 그의 고용 기관은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시간, 병가 및 법적으로 규정된 수당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임금에 관한 모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수당 및 보수를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징계 조치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채용 비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 급여 기간에 대해 공급업체는 수행한 작업에 대한 정확한 보수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시의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면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하며, 법적 최저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시직, 파견직 및 외주 노동의 모든 사용은 현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지 법률이 없는 경우, 학생 근로자, 인턴 및 견습생의 임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입 근로자와 최소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임금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인정된 통화로 적시에 직접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현지 법률에 따라 근무 시간 및 임금 관련 문서를 기록합니다.

인도적 대우

공급업체는 폭력, 성별 기반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모욕 또는 근로자에 대한 언어 폭력 등,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도 있어선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요구 사항의 위반에 대해 징계 정책 및 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합니다.

채용 관행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공급업체의 대리인 또는 하청 대리인의 채용 수수료 또는 기타 그들의 고용에 대한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직자와 근로자가 그러한 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 받는 경우 공급업체는 그들에게 전액을 상환합니다.

공급업체가 인력 중개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윤리적인 고용 관행을 적용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분증을 맡아두는 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괴롭힘 금지

공급업체는 작업장 내에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공급업체는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임신, 종교, 정치 단체 가입, 노동조합 회원, 재향 군인 신분, 보호받는 유전 정보, 결혼 여부, 또는 임금, 승진, 보수 및 교육 기회와 같은 고용 및 고용 관행을 포함하여 법으로 금지된 기타 사유를 근거로 피고용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협박, 폭력 또는 기타 불리한 행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하고, 단체 교섭을 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및 ILO 핵심 협약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또한 근로자가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권리도 아울러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표현,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회원 및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여하한 형태의 위협, 협박, 물리적 또는 법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취약 집단

공급업체는 자신의 비즈니스 및 공급망 내에서 취약한 집단의 권리, 특히 여성, 원주민, 아동,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고용 수준에 걸쳐 동일한 급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성희롱 예방, 신체적 안전 제공, 수유모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여성 근로자들에게 특히 일반적인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인권 옹호자

인권 옹호자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공급업체는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시민 참여 및 인권을 위한 안전하고 활성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위협, 협박 또는 공격을 용인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GM은 공급업체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칭송하며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화를 개발하고 촉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급업체는 이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인력과 리더십에서 다양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건강 및 안전

공급업체는 자사의 모든 직원에게 법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 충족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의 직원을 위한 안전 절차 및 작업장 안전사고 근절 목표의 추진을 위한 추적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직원은 근로를 거부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자신의 구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의 건강과 안전을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직업 안전

공급업체는 위험 제거, 프로세스 또는 자재의 대체, 적절한 설계를 통한 제어, 엔지니어링 및 관리 제어 구현, 예방적 유지보수, 안전한 작업 절차(잠금 장치/표지(LOTO) 포함) 등, 건강과 안전에 관한 모든 위험에 근로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 시작 전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직업 건강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건강 및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에 명확하게 게시하거나 근로자가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PPE)와 사용 방법 및 사용 시기에 대한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이러한 위험과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위험 상황에 관해 피고용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상 대비

공급업체는 비상 상황 및 사건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식별 및 평가하고, 비상 보고, 피고용자 통지와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훈련을 포함한 비상 계획과 대응 절차를 시행하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비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알아보기 쉽고

장애물이 없는 출구, 적절한 출구 시설, 비상 대응 요원의 연락처 정보,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

공급업체는 손으로 하는 자재 취급, 무겁거나 반복적인 들어올리기, 장시간 서 있는 자세, 고도로 반복적이거나 힘이 가해지는 조립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식별, 평가 및 통제합니다.

기계 안전장치

공급업체는 안전 위험에 대해 생산 및 기타 기계 설비를 평가합니다. 기계가 근로자에게 부상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물리적 보호 장치, 안전 장치 및 장벽을 반드시 제공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위생, 식품, 주거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청결한 화장실 시설, 식수 및 위생적인 식사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 기숙사 또는 거주 공간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또한 적절한 비상 탈출구,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 적절한 조명, 난방 및 환기, 개인 용품과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잠금 장치가 된 편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직업상 부상 및 질병

공급업체는 근로자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 및 질병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여 직업상 부상 및 질병을 예방, 조사, 근본 원인 제거, 관리, 추적 및 보고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합니다.

제품 안전

공급업체와 하청업체는 GM 차량과 관련된 모든 안전 문제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Speak Up for Safety"는 GM을 대리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가 차량 안전 문제를 보고하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GM Awareline](#)을 통해 언제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

책임 있는 관리

공급업체는 주변의 지역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생산 변경, 유지관리와 시설 공정, 자재의 대체, 재사용, 보존,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과 같은 관행을 통해 용수, 화석 연료, 광물 및 원시림 제품을 포함한 천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배출, 오염 및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천연 자원의 사용을 지원하여 순환성과 폐쇄 루프 시스템을 촉진해야 합니다.

환경 허가 및 보고

공급업체는 해당되는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인 환경 법률을 준수합니다. 공급업체는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이들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운영 및 보고 요구 사항을 따르고, 요청 시 해당 문서를 GM에 제공합니다. GM은 모든 공급업체가 과감하게 규정 준수 의무를 넘어 회사 전체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추가 관행을 통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염 방지

공급업체는 원천적으로, 또는 오염 제어 장비 추가, 생산 변경, 유지관리 및 시설 공정과 같은 관행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배출 물질 및 오염 물질의 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오염 물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공개하고, 적절하게 제어하고, 최소화하고, 오염에 기여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체 시설에서 오염원의 누적된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온실 가스 배출

공급업체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범위 1, 2, 3의 온실 가스 배출을 추적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범위 1, 2, 3의 온실 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GM과 공유하고, 또한 GM이 선택하는 제3자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게시합니다. 공급업체는 시간 제한이 있는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최소한 GM의 공급업체 지속 가능성 협력업체 서약과 일치하는 승인된 과학 기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대기 배출

공급업체는 해당되는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대기 오염 관리법을 따릅니다. 공급업체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특성화하고,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처리합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은 반드시 몬트리올 의정서 및 해당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체적인 대기 배출 제어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유해 대기 배출은 허가 및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 규정에 따라 특성화, 모니터링 및 제어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효율성을 위해 대기 배출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유해 물질

공급업체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식별, 라벨 표기, 보관 및 관리하고, 또한 GM 요구 사항과 국제, 국내 및 현지 법률에 따라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실현합니다. 공급업체는 제품 및 제조 공정 내에서 위험 물질 및 우려 물질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물질 제한

공급업체는 라벨 표기 및 폐기를 포함하여 제품 및 제조 상에 있는 특정 물질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GM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GM에 공급된 모든 물질 또는 자재의 구성에 대한 정보 또는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고형 폐기물

공급업체는 (유해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을 식별, 관리, 감소 및 책임 있게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시행합니다.

용수 관리

공급업체는 수원, 사용 및 배출을 문서화, 특성화 및 모니터링하는 용수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용수를 절약할 기회를 찾고, 또한 오염 경로를 제어합니다. 폐수는 배출 또는 폐기 전에 요구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특성화, 모니터링, 제어 및 처리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최적의 성능과 규정 준수를 위해 폐수 처리 및 억제 시스템에 대해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공급업체는 용수를 효과적으로 재사용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허가되지 않은 배출을 방지하고 이러한 배출의 잠재적 영향과 빗물 유출로 인한 범람을 완화해야 합니다.

동물 복지

공급업체는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세계 동물 건강 기구(OIE)가 공식화한 5가지 동물의 자유 즉, 굶주림, 갈증 및 영양 부족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및 온도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표현할 자유에 따라 동물 복지를 존중하고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합니다. 어떤 동물도 자동차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단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도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GM은 연구 목적 또는 차량 개발을 위한 테스트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물의 사용을 수행하거나 위임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자체 연구 또는 개발에서 동물 실험과 관련된 원자재, 구성 요소, 부품 또는 조립품을 GM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지속적 개선

공급업체는 자신의 회사 전반에 걸쳐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발자국, 에너지 사용, 용수 사용, 자재 사용, 폐기물 및 기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망을 통해 지속 가능성 기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조달 정책을 적절히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지속 가능성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추적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책임 있는 조달

실사

공급업체는 GM의 분쟁지역 광물 정책 및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정책에 따라 모든 광물 및 자재의 책임 있는 조달을 약속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3TG)에 대한 현재의 보충을 포함하여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에 따라 실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는 필요에 따라 부품, 자재, 구성 요소 및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3TG 광물에 대해 최신 제련소/정제소 정보를 GM에 공개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요청 시 보고 템플릿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 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2차 공급업체와 협력합니다.

토지 권리

공급업체는 자신이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를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현지 법률, ILO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No. 169)과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따라 개인,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토지 권리를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특히 취약 집단의 존재를 고려하여 적절한 생활 조건, 교육, 고용, 사회 활동에 대한 지역 사회의 권리 및 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에 대한 자유로운, 사전 및 통지에 입각한 동의(FPIC)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생태계, 특히 공급업체 운영의 영향을 받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IUCN 결의안 및 권고를 비롯한 국제 생물 다양성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삼림 벌채를 방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토양 침식, 영양소 분해, 침하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소음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 소음 수준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청렴성

부패 방지/뇌물 금지

공급업체는 어떤 형태이든 부패, 뇌물수수, 자금 세탁, 횡령, 갈취 또는 사기 행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정부 공무원, 고객 또는 기타 제3자와의 협상 또는 기타 일체의 거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 선물 또는 불법적 인센티브 등의 일체의 유가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부패 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록 보관 및 시행 절차를 시행합니다.

정보의 공개

공급업체는 해당 규정에 따라 노동, 건강 및 안전, 환경 관행, 업무 활동, 구조, 재정 상황 및 수행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공급업체의 모든 비즈니스 거래는 투명하게 수행되고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기록의 위조 또는 공급망의 조건이나 관행의 허위 표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적 자산

공급업체는 지적 재산을 존중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은 반드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모조 부품

공급업체는 GM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에 모조 부품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전달되는 제품에 전용(轉用) 부품 및 자재를 사용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품 설계 과정에서 관련 기술 규정을 준수합니다.

개인 정보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고객, 소비자 및 피고용자를 포함하여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개인 정보 보호 기대치를 보호합니다. 공급업체는 개인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법률과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수출 통제 및 경제적 제재

공급업체는 물품, 소프트웨어, 용역 및 기술의 수출, 재수출, 배포 또는 기타의 이전에 적용되는 모든 제한 사항, 즉 특정 지역, 법인 및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모든 경제적 제재 제한(제3자에 대한 적절한 실사 수행을 포함) 및 기타 모든 유사한 무역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윤리적 행동

공급업체는 공정한 비즈니스, 광고 및 경쟁의 기준을 포함하여 모든 비즈니스 상호 작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 관련 법률에 따라 이해 상충을 피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고수해야 하며, 반경쟁적 비즈니스 관행에 관한 법률, 지적재산권, 회사 및 개인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에 관한 법률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피고용자가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 관계가 직무 책임과 충돌하는 상황 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피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충 처리 메커니즘 및 보복 금지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청렴성 문제, 인권 문제, 안전 문제 및 위법 행위를 보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법률에 의해 부과된 제한 사항에 따라,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기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환경을 제공하여 고충 처리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내부 고발자의 기밀을 합리적으로 보호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다른 공급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공급업체 운영과 관련된 하청업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세스를 적절히 마련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만들 때, 공급업체는 메커니즘의 설계, 시행 또는 수행에 대해 잠재적 또는 실제의 사용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유엔 이행원칙의 효율성 기준에 따라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선의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복을 금지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망을 통해 이러한 기대치를 전달합니다.

GM에 우려 사항 보고

법률이 부과하는 제한 사항에 따라, 공급업체는 본 강령이 적용되는 사항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GM에 알리고 이후 조사에서 GM과 협력합니다. GM 정책은 이러한 우려 사항을 보고하는 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만 사항의 보고를 위해 공급업체는 언제든지 GM 글로벌 구매 및 공급 체인 담당자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M Awareline을 통해서도 직원, 계약자, 공급업체 및 기타 관계자가 GM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전화, 웹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보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GM Awareline에 보고를 제출하는 개인은 법으로 허용되는 바에 따라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GM Awareline에 관한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한 링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개선 노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파악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구제책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그의 대리인과 접촉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망을 통해 이러한 기대치를 전달합니다.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는 해당 법률 및 본 강령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공급업체는 GM의 요청에 따라 본 강령에 대한 준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일체의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현장 평가 또는 감사에 참여합니다.

관리 시스템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원진의 노력

공급업체는 관리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진과 회사 대표를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고위 경영진은 관리 시스템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공급업체는 자사의 지속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GM은 공급업체에게 인근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그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와 전략을 수행할 것을 장려합니다.

위험 평가 및 관리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즈니스 위험, 법규 준수, 환경, 건강 및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전략을 적절히 마련합니다. 공급업체는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고, 또한 식별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적 및 물리적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하청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및 공급업체 운영에서 이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합니다.

개선 목표

공급업체는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 본 강령의 내용,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고객 계약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되는 주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내부 또는 외부 평가, 검사,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시의 적절하게 수정하는 프로세스를 갖춥니다.

교육

공급업체는 자신의 정책, 절차 및 개선 목표를 시행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본 강령과 GM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에 대한 새롭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화

공급업체는 자신의 정책, 관행, 기대치 및 수행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갖춥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와 함께, 규정 준수 및 회사 요구 사항 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문서와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 관리합니다.

공급업체 책임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망을 통해 이러한 강령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본 강령 또는 본 강령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및 관행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갖춥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망을 통해 본 강령 또는 본 강령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요구 사항을 전달하려는 노력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주요 정책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은 여러 GM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책과 아래에 열거된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GM 정책:

- [행동 강령 - Winning with Integrity](#)
- [인권 정책](#)
- [분쟁지역 광물 정책](#)
-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정책](#)
- [글로벌 작업장 안전 정책](#)
- [보복 금지 정책](#)
- [노예제 및 인신매매 금지 선언문](#)
- [괴롭힘 방지 정책](#)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정책](#)
- [글로벌 정보 보안 정책](#)
- [제품 사이버 보안 정책](#)
- [청렴성 정책](#)
- [글로벌 환경 정책](#)

국제적 정책:

- [세계 인권선언](#)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 [유엔원주민권리선언](#)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 [ILO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No. 107\)](#)
- [ILO 원주민 및 부족 민족 협약\(No. 169\)](#)

-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
- 자동차 산업 지도 원칙